[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원 문

[청워의 취지]

기후 위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우리는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음. 코로나19로 팬데믹이 공표되자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앞다투어 수출을 멈추고 교류를 중단한 바 있음.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되었음.

그러나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그에 입각한 농업 정책은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식량 위기라는 시대상황에 맞춰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함.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이유

-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며,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생태와평등의 가치를 담은 농촌의 미래를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민·농업·농촌 정책기본법」(약칭: 「농민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민·농업·농촌 정책기본 법」으로 함.

나.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가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이법의 목적으로 함.

다. 농민의 정의(안 제3조제1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 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라. 농민의 권리(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 방법을 결정할 권리와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식량주권), 자신이 보유해온 종자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 물질을 보관·활용·교환 및 판매할 권리(종

자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농약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농업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농업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권리(물에 대한 권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수출·판매할 권리(농산물 가공권), 농업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게 노동하고 업무생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재해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노동업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근로관계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이러한 권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농업·농촌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는 농민의 권리와 적정소득 보장,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목표 달성, 국가책임 농정 실현 및 공공농업 기반 확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 실현,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농업의 탄소중립 전환와 기후위기 적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바. 국가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및 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완계획의 수립 등 (안 제34조부터 제36조)
 - 1)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사료 곡물을 포함한다) 50%, 열량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식량자급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5% 이상, 열량 자급률을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로 함.

- 2)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는 식량자급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목표 달성 보완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 가족농 지원 및 가족농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안 제47조 및 제 53 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농(혼인한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 체를 구성한 쌍방이 모두 농민인 가구)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확보,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 개선, 돌봄의 평등한 분담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2) 가족농 구성원인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 사이에서는 농지와 농업 생산설비에 대하여 부부 또는 쌍방의 공유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
- 아.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평등권 보장(안 제51조 및 제52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 대우하고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생산자단체 및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서 동등한 의사결정참여권을 갖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안 제61조)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시 공공이 매수하여 공급 부족시 방출하는 공공수급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이시급한 품목을 포함하며 적용 대상 농산물의 지속적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차. 농민수당 등(안 제6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농민수당 등이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충분한 수준이 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카. 농지의 보전과 확충(안 제69조부터 제78조)

1)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 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이를 실경작농 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농지임차인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 등 필요한 정 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3) 농지관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권은 효력을 잃도록 함.
- 4) 농지총량관리와 경자유전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두고, 농지의 보전, 취득 및 이용의 관리를 위해 시·군· 구·읍·면·동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둠
- 타.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적응(안 제93조부터 제96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 등의 공익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2)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촌 지역에 설치·운용하는 전기사업을 허용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주민이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파.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등(안 제102조부터 제10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골재채취 허가 허가 등으로 농업여건 및 농촌 주민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폐기물 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 수립, 인접 농지 및 주거지와 이격 거리를 둘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주민의 알 권리·시설의 가동 및 골재 채취 중지 요청권·피해배상청구권·복구요청권 보장 등의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하. 농업 부문 통상정책(안 제115조 및 제116조)

정부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6조의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품목 재배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청원원문을 작성하여야 함
- ※ 해당 청원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 해당 청원원문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